

부천시역 노사정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7. 7) 상정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7. 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강 성 모)

가. 제안이유

-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 협력과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천시역노사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역노사정협의회의 명칭을 부천시역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(안 제1조)
- 협의회는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,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,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·의결함.(안 제2조)
-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(안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29호
의결 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6. 2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 협력과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의 명칭을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함.(안 제1조)
- 나. 협의회는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,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,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협의·의결함.(안 제2조)
- 다.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(안 제3조)

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본 조례”를 “이 조례”로 하고, “고용안정 및 실업극복”을 “노사협력증진,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”으로 하며, “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칭한다)”를 “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의결한다.

1.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
2.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
3.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
4.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
5.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시장

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
3. 시 노동업무담당국장
4. 부천시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명
5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1명
6.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

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파트너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노동부지방사무소”를 “지방노동관서”로 하며, “10인 이내”를 “10명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단체등”을 “단체 등”으로 한다

제8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“여비등 기타”를 “여비 등 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 조례</p>	<p>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<u>본 조례는</u>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<u>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칭한다)</u>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</u>----- ----- <u>노사협력 증진,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</u>----- ----- ----- <u>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<u>협의회는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,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</u> 2. <u>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</u> 3. <u>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</u> 4. <u>협의회 및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</u> 	<p>제2조(기능) <u>협의회는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·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</u> 2. <u>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</u> 3. <u>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</u> 4. <u>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</u>

현행	개정안
<p>5.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제3조(구성)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근로자 위원 2명 2. 사용자 위원 2명 3. 부천시 위원 1명 4. 부천시의회 위원 1명 5. 지방노동부사무소 위원1명 6.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명 <p>②위원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위원은 위원중에서 각계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부천시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.</p>	<p><u>이행방안</u></p> <p>5.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 3. 시 노동업무담당국장 4. 부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 2명

현행	개정안
<p>④관계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⑤시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.</p> <p>⑥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회의)①(생략)</p> <p>②협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제6조(실무협의회)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,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</p> <p>②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, 사용자 대표 1명, 부천시 대표 1명, 노동부지방사무소 대표 1명,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명 등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	<p>5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1명</p> <p>6.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</p> <p>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파트너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각 호의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실무협의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그 밖에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지방노동관서</p> <p>-----10명 이내-----</p> 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)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, <u>단체</u>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) ① ----- ----- -----, <u>단체</u> 등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----- ----- -----<u>각 호</u>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수당등) 협의회와 실무협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안에서</u> 수당, <u>여비</u>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0조(수당등) ----- -----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-- <u>여비</u> 등 그 밖에 ----- ----- -----.</p>